

던 서울特別市地下鐵公債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지요?

(「네, 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異議가 없으시다 함으로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下鐵公債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俸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중 “지하철”을 “도시철도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하철도”를 “도시철도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”을 “도시철도법”으로 하며, “지하철공채”를 “도시철도공채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지하철공채”를 “도시철도공채”로 하고,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및 제2항중 “지하철공채”를 “도시철도공채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도시철도법시행령”으로 하며, “지하철”을 “도시철도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”을 “도시철도법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“지하철공채”를 “도시철도공채”로 하고, 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도시철도법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지하철공채”를 “도시철도공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서울特別市地下部分土地使用에따른補償基準에대한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

(11時 44分)

○委員長 李永和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地下部分土地使用에따른補償基準에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.

(議事俸 3打)

서울特別市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 補償基準에 대한 條例案은 지난 定期會議時 朴夏榮, 方孝吉, 梁元模委員 세 분으로 條例審査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條例案에 대하여 審査를 해 왔으므로 먼저 朴夏榮 小委員長 님으로부터 그 동안 審査한 結果에 대하여 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朴夏榮委員님 나오셔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條例審査小委員長 朴夏榮 條例審査小委員長 朴夏榮委員입니다. 本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 補償基準에 대한 條例案審査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.

○委員長 李永和 이게 第1次 報告죠?

○條例審査小委員長 朴夏榮 네.

方孝吉委員, 梁元模委員 그리고, 本委員으로 구성된 條例案審査小委員會는 지난 定期會 때 交通委員會에서 回附하여 주신 本 條例案에 대하여 1992年 1月 29日에 第1次 小委員會 및 2月 18日에 第2次 小委員會를 열어 執行部側인 地下鐵建設本部長을 參席시킨 가운데 深度 있는 檢討와 측조심을 하였습니다.

本 條例案은 여러 委員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地下鐵建設에 따른 該當地域에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대한 구체적 補償範圍와 補償對象地域의 分類, 補償費算定 및 區分地上權設定 등을 規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